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김선교·박상웅·김상훈
김성원·최보윤·김소희
박덕흠·유상범·구자근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및 토지 등의 수용”을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로, “및 제8조의2”를 “, 제8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 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 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 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 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 각 준용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 ----- ----- ----- ---,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u> <u>등의 보조</u> ----- ----- -----, <u>제8조의2</u> 및 <u>제22조</u> -----.